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19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년 5월 25일
- 회 부 일 : 2022년 5월 27일

## 2. 제안이유

-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항의 위치 변동 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발생 요인 없음).
- 다. 입법예고(2022. 3. 17. ~ 2022. 4. 6.)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하는 예술품\*의 구매·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법 제103조의3제1항)

※ 법 개정 신규대조표 별첨(구매 관련 규정 정비사항 발췌)

-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집약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으로 분법되면서 법의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 7개 조항으로 2017년에 제정<sup>1)</sup>된 것으로,

※ 지방세징수법 제정(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정)

- 본 개정조례안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예술품의 구매·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6조 부터 제19조 까지, 14개 조문)은 지난 제284회 정례회에서의 의결(2018.11.21.)로 신설(2019.1.3. 전부개정, 시행)된 바 있음.

※ 「국세징수법」(제104조 등)의 경우에도 압류한 예술품 등의 경우 세무서장이 전문 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 「지방세징수법」 입법 배경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 관련 현행 본 조례 14개 조항 〉

조 항	내 용
§6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전문매각기관 및 대상기관의 선정
§7 (대상기관의 선정)	대상기관 신청서류 및 선정 시 시보·시 홈페이지 공고
§8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1차 서류심사(업무소관 부서장), 2차 심사(위원회)
§9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장(재무국장), 위원 시 소속 과장급 6명으로 구성
§10 (대상기관 선정 취소)	부도, 파산 등 업무수행 곤란, 중대한 범죄행위 등
§11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1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3회 이상 경매 실시 또는 1년 경과 미매각시 해제요청
§13 (매각재산의 인도)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 시 매각재산 인도 및 인수증 수령
§14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수수료 적정여부 확인 및 수수료 차감 금액 수령
§15 (매각대금의 배분 등)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 및 체납액 총당
§16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청구
§17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과다한 체납처분비 예상,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등
§18 (비밀유지 등)	매각대행 시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19 (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발생 시 배상 의무 규정

\* 본 개정조례안 대상 조문

-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은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압류재산 중 예술품(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본 법 개정 취지(이동 신설)는 현재 매각 절차마다 전문매각기관 등의 대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절(제11절의2)을 신설하여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 및 법 시행령 조문의 이동\*(삭제 및 신설)에 따른 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인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등) 삭제 → 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등) 신설(시행 2022.1.28., 법률 제18794호, 2022.1.28., 일부개정)

· 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삭제 → 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신설(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2호, 2022. 1. 28., 일부개정)

○ 한편,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50점의 예술품(그림)을 압류처분하여 이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압류 유지중인 예술품은 28점임.

※ 체납자 개인별로 미술품 1점에서 최대 11점까지 압류 중이며, 체납 총액은 5,041백만원

- 최근 3년간 예술품 공매의뢰 내역을 보면 체납자 5명에 대하여 7점의 예술품을 공매의뢰 하여 위품 2건을 제외한 5점의 예술품의 공매처분을 통해 1억 1천 8백만원을 배당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한 바 있음.

**< 최근 3년간 예술품 7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

공매의뢰 미술품		매각 현황		매각 취소 내역		비고
체납자	공매 의뢰	매각 미술품	서울시 배당액	취소 미술품	취소 사유	
전두환 외 4명	7점	5점	118백만원	2점	위품 확인	

※ 이중 5점은 매각되었으며, 2점은 위품으로 판정되어 공매의뢰가 반려

○ 다만, 재무국에서는 압류 동산의 적극적인 매각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매각기관으로 주식회사 케이옥션과 업무협약서를 체결(2021.3.23.)하였으나,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아직까지 매각 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바, 협약의 적극적 추진으로 효율적인 매각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주)케이옥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비교 >**

구 분	(주)케이옥션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요 매각대상	예술품	부동산
매 각 수 수 료	협약가능	법정수수료*
물품 보관장소	제 공	미제공
기 타	미술품 등 압류 검토 지원(이미지)	-

\* 별첨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예술품 압류 내역 >**

연번	체납자 현황		담당자	압류일자	보관장소
	건수	체납액(원)			
1	9	105,603,640	이**	'04. 11. 6.	체납자
2	1	20,892,830	이**	'16. 3. 21	체납자
3	4	238,646,190	이**	'17. 11. 23.	체납자
4	7	51,863,570	이**	'21. 5. 24.	체납자 38금고
5	7	130,517,860	이**	'21. 5. 18.	체납자
6	1	98,992,610	은**	'21. 5. 20.	체납자
7	6	615,354,490	문**	'19. 11. 20.	체납자
8	1	25,890,970	김**	'21. 9. 8.	체납자
9	3	120,375,840	김**	'17. 11. 30.	체납자
10	11	3,633,710,410	강**	'21. 3. 3.	체납자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

# 참고자료 1

## 공매 매각 수수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2022.3.18. 개정)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3. 18.>

###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수수료율	최저수수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채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참고자료 2**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

(시행 2022.1.28., 법률 제18794호, 2022.1.28., 일부개정)

- 공매 관련 규정 정비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 부개정법률 제71조(공매) ① ~ ④ (생략)</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 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 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 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 사”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 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p>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p>	<p>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 부개정법률 제7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 음)</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u>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u></p> <p><u>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현 행	개 정 안
<p><u>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u></p> <p><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 <p>제72조(수의계약) ① (생략)</p> <p><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u></p>	<p>제72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현행	개정안
<p>1. ~ 5. (생략)</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8항을 준용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1. ~ 5.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11절의2 공매등의 대행</p> <p>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p>1. 제71조에 따른 공매</p> <p>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p>

현행	개정안
	<p>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u>권리이전</u></p> <p>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p> <p>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u>공매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으로 본다.</u></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에는 <u>세무공무원으로 본다.</u></p> <p>⑤ 제1항에 따라 <u>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p>

현행	개정안
	<p>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